

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

1. 교육기관번호 :
2. 기 관 명 :
3. 대 표 자 :
4. 소 재 지 :

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